

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한범 의원 등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7년 12월 5일
- 회부일자 : 2017년 12월 7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지원·육성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정의(장애인문화예술인,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등) (안 제2조)
-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·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(안 제3조~제4조)
-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(안 제6조)

5. 검토의견

- 위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지원·육성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·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(안 제4조), 장애인 미술작품 구입(안 제7조) 등을 통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.
-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여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. 끝.